

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○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·자원화 정책의 필요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·점검의무에 관한 규정 및 감량의무이행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토록 하는 규정의 신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 내용을 당해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고, 기타 표현의 수정 등 명령상의 용어의 통일이 필요함.

2. 주요골자

- 제명 및 본문·별표·별지 서식 중 “음식물쓰레기”를 법령상의 용어인 “음식물류 폐기물”로 변경
-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·운반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·배출장소·배출용기·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(안 제4조)
-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시 구청장의 신고필증 교부토록 하고,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토록 하고,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7조제1호·제3호 및 별지 제1호)
-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. (안 제10조제2항)
-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 위탁계약체결 내용과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.
(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)
-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·점검의무 규정 마련. (안 제17조)

3. 참고자료

- 폐기물관리법 제12조,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, 제15조, 제63조제1항제1호, 제63조제3항제2호
-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, 제6조의2
-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, 별표4제3호라목
- 음식물류폐기물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 - 환경부

4. 검토의견 (전문위원 서 동 근)

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 안에 의거 제명 및 본문 중 “음식물쓰레기”를 “음식물류 폐기물”로 법령상 용어로 통일하고,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필요성 확보를 위하여 상위법령 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 안에 의거 본조례 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